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8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황명선

박정현 • 정을호 • 위성곤

서영교 • 이기헌 • 박상혁

윤준병·김원이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 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 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철도안전법」을"을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안전법」을"로 한다.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3(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u>「철</u>	이 법
<u>도안전법」을</u> 적용한다.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철도안전법」을</u> .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⑦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을 마런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u><신 설></u>	제41조의3(도시철도의 혼잡도 측
	정 및 완화 등) ① 도시철도운
	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
	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
	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
	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위

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혼잡을완화또는해소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혼 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 혼 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